

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법인세법」 개정 법률 공포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2. 법률 제18590호(2021.12.21.)로 일부 개정 공포된 「법인세법」의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3. 본 내용은 우리조합 웹사이트(www.scra.or.kr)자료실 법령 제·개정에서도 확인 가능하며, 개정법령 전문은 법제처 웹사이트(www.moleg.go.kr)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주요내용

공포법률	주요내용	비고
법인세법	-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%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세 부과 -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부과	소득세법 개정내용은 서자대조21-1369호 (2021.12.09.) 참조

붙임 : 법인세법 개정법률 안내 (발체) 1부. “끝”

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



수신자 회원사 전체(235개사)

담당자	주임	부장	기획실장	상무	이사장
	박종우	김진석	박상광	성정현	배준영

협조자

시행 서자대조-1415 (2021.12.21) 접수

우 067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길4(프린스효령빌딩)202호 / <http://www.scra.or.kr>

전화번호 02-525-9076 팩스번호 02-525-9063 / scra@scra.or.kr / 공개

[붙임]

법인세법 개정법률 안내(발췌)

□ 법인세법 (제74조의2 신설)

- 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% 가산세
- ②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
-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% 가산세

<신·구 대비표>

종 전 법 률	개 정 법 률
제27조의2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)	제27조의2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)
①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(운수업,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, 이하 <u>이 조에서 “업무용승용차”라 한다</u>)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“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”이라 한다</u> ----- ----- -----.
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<u>이 조에서 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”이라 한다</u>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사용금액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“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”이라 한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③ ~ ⑦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③ ~ ⑦ (현행과 같음) <u>제74조의2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)</u> ① <u>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</u> <u>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</u> <u>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</u> <u>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</u> <u>명세서(이하 이 항에서 “명세서”라 한다)</u> <u>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</u> <u>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</u> <u>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</u> <u>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</u> 1. <u>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: 해당</u> <u>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</u> <u>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</u> <u>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</u> 2. <u>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:</u> <u>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</u> <u>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</u> <u>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</u> <u>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</u> <u>의 1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</u> <u>경우에도 적용한다.</u>
--	---

<부 칙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8조(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)

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
등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